

2019. 6. 20.(목)

제373회 정례회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I . 세입·세출 결산 .....	
1 . 세입·세출결산 총괄 .....	
가. 세입결산 .....	
나. 세출결산 .....	
2 . 일반회계 결산 .....	
가. 세입결산 .....	
나. 세출결산 .....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	
라. 계 속 비 .....	
마. 예비비 지출 .....	
바. 이월사업비 .....	
사. 집행잔액 .....	
아. 채무부담행위(없음) .....	
3 . 특별회계 결산 .....	
II . 기금 결산 .....	
III . 채권·채무 결산 .....	
IV . 재산·물품 결산 .....	
V . 결산검사 의견 요약 .....	
VI . 주요 재정사항 요약 .....	
VII . 예비비 지출 .....	
VIII . 성과보고서 .....	
IX . 성인지 결산 .....	

# I. 세입·세출 결산

## 1.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결 산		현년도 채 무 상 환	결산상 잉여금				
		세입(B)	세출(C)		소 계 (D)=(B-C)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총 계	4,722,701	4,801,282	4,353,903	-	447,379	138,189 (35,429)	2,160	307,030	
일반회계	4,197,701	4,274,055	3,885,469	-	388,586	115,202 (35,429)	2,120	271,264	
특별회계	525,238	527,227	468,434	-	58,793	22,987	40	35,766	
기 타	소 계	525,238	527,227	468,434	-	58,793	22,987	40	35,766
	소 방 특별회계	192,020	191,978	178,178	-	13,799	11,987	40	1,772
	의료급여 기	233,321	233,339	233,265	-	74	-	-	74
	농 어 촌 개발기금	14,592	14,504	13,020	-	1,485	-	-	1,485
	학교용지 부 담 금	39,147	41,384	11,752	-	29,631	11,000	-	18,631
	광 역 교통시설	13,550	13,393	2,194	-	11,199	-	-	11,199
	충청북도 균형발전	32,608	32,629	30,025	-	2,605	-	-	2,605

※ ( )는 자금없는 이월액임 - 이월사업비에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는

- 세입결산 총액(실수납액)이 4조 8,012억원으로

· 일반회계 4조 2,740억원(89.0%)

· 특별회계 5,272억원(10.9%)

예산현액 대비 1.6%인 785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2017회계연도)보다 1,187억원이 증가되었음.

- 세출결산 총액(지출액)은 4조 3,539억원으로

· 일반회계 3조 8,854억원(89.2%)

· 특별회계 4,684억원(10.8%)

예산현액 대비 92.2%를 지출하였으며 전년도(2017회계연도) 94.3%보다  
2.1%정도 감소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6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7%이며 이중

· 일반회계 1,506억원(83.4%)이고

· 특별회계 229억원(16.6%)으로

전년도 1,452억 77만원보다 284억원(19.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미수납액 ㉢=㉡-㉣
			수납총액 ㉣	환급액 ㉤	실제수납액 ㉢=㉣-㉤	
합 계	4,722,701	4,832,403	4,818,868	17,586	4,801,282	27,917
일반회계	4,197,463	4,300,166	4,291,640	17,585	4,274,055	22,908
특별회계	525,238	532,237	527,228	1	527,227	5,009
기타특별회계	525,238	532,237	527,228	1	527,227	5,009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세입예산현액은 4조 7,227억원이며,
  - 징수결정액은 4조 8,324억원(102.3%)임.
- 실제수납액은 4조 8,012억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99.4%(일반회계 99.4%, 특별회계 99.1%)이며
  - 예산현액 대비 101.7%(일반회계 101.8%, 특별회계 100.4%)임.
- 미수납액은 279억원으로
  - 징수결정액 대비 0.6%(일반회계 0.5%, 특별회계 0.9%)임.
- 환급액은 175억원으로
  - 수납총액 대비 0.4%(일반회계 0.4%, 특별회계 0.0%) 임.

## 나.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722,701	4,353,903	173,618 (35,429)	195,180
일 반 회 계	4,197,463	3,885,469	150,631 (35,429)	161,363
특 별 회 계	525,238	468,434	22,987	33,817
기타특별회계	525,238	468,434	22,987	33,1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조 7,227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4조 3,539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2.2% (일반회계 92.6%, 특별회계 89.2%)임.

## 다. 잉여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계	이 월 액 내 역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447,379	116,196	14,298	7,695	2,160	307,030
일 반 회 계	388,586	99,447	10,322	5,433	2,120	271,264
특 별 회 계	58,793	16,749	3,976	2,262	40	35,766
기타특별회계	58,793	16,749	3,976	2,262	40	35,766

- 일반회계 잉여금은 3,885억원으로
  - 명시이월 994억원(25.6%),
  - 사고이월 103억원(2.7%),
  - 계속비이월 54억원(1.4%),
  - 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0.5%),
  - 순세계잉여금 2,712억원(69.8%) 임.
-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229억원(39.1%)이며, 이중 명시이월 167억원(28.5%), 순세계잉여금 357억원(60.8%)임.

## 2. 일반회계 결산

### 가. 세입결산

#### □ 재원별 수납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재원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 금 액	실제수납액	
합 계	4,197,463	4,300,166	4,291,640	17,585	4,274,055	22,908
지방세수입	1,032,114	1,158,276	1,148,285	13,595	1,134,690	20,544
세 외 수 입	77,510	92,676	90,299	148	90,151	2,364
지방교부세	714,348	716,128	716,128	0	716,128	0
보 조 금	1,877,434	1,837,227	1,841,069	3,842	1,837,227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6,057	495,859	495,859	0	495,859	0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1,974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3,001억원(102.4%)임.

#### <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 >

(단위 : %)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 납 율	99.2	99.2	99.5	99.3	99.4

- 실제수납액은 4조 2,74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율은 99.4%임.

####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초과수납액	1,073	882	1,020	1,205	766

-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766억원(지방세 1,026억원, 세외수입 126억원, 지방교부세 18억원, 보조금 △402억원)으로 초과수납액이 전년(1,205억원) 대비 439억원(36.4%) 감소하였음.

※ 2017년 초과수납액 현황

< 지방세 1,207억원, 세외수입 100억원, 지방교부세 △26억원, 보조금 △125억원 >

- 이는 대부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초과세입된 것으로,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함.

< 연도별 환급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반환액	110	157	114	217	175
징수결정액 대비반환율	0.3%	0.3%	0.2%	0.5%	0.4%

- 환급액은 전년도 217억원 보다 42억원이 감소한 175억원으로 2017회계와 비교하여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전체의 53.5%(94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21.9%(38억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세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43억원 중 수납총액이 107억원으로 수납액 비율이 74.3%이며, 수납액 중 과오납반환으로 94억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은 12억원에 그치고 있음.
  - 환급액은 17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4%에 해당되며, 환급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는 총 142억원(80.9%)에 달하고 있으며, 반면 행정기관의 착오부과는 0.7%인 1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 의견 >

- 환급액의 대부분이 납세자 착오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도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행정행위인 만큼 다양한 홍보로 지방세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수납액	279	310	312	296	229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	0.8%	0.8%	0.8%	0.7%	0.5%

- 미수납액은 229억원으로 전년도(296억원)에 비해 67억원(22.6%) 감소한 규모이며, 이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이 104억원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납세태만 및 소송진행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운 면도 있겠으나, 징수결정액(143억원) 대비 실수납액(12억원)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검토 의견 >

-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도민 공정과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부세 산정시 패널티 부여 요인이므로 지방세 징수를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의무 및 과세 당위성에 대한 홍보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액(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결 손 액	미수납액
합 계	4,197,463	4,300,166	4,274,055	3,203	22,908
지 방 세	1,032,114	1,158,276	1,134,690	3,042	20,544
취 득 세	549,758	618,692	615,505	305	2,882
등록면허세	46,628	45,867	45,742	1	124
지방소비세	243,613	264,487	264,487	0	0
지역자원시설세	31,115	42,218	41,158	13	1,048
지방교육세	155,000	172,669	166,557	34	6,077
지난년도수입	6,000	14,343	1,241	2,689	10,413
세외수입	77,510	92,676	90,150	161	2,364
경상적수입	18,756	19,967	19,870	0	96
임시적수입	58,754	72,709	70,280	161	2,268

- 지방세 미수납액은 205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8%로 지난해(2.4%)보다 감소하였음.
  - 취득세는 29억원으로 0.5%로 지난해(0.1%)보다 증가
  - 지방소비세는 100% 수납되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2.5%로 지난해(2.3%)보다 0.2% 증가
  - 지방교육세는 3.5%로 지난해(3.8%)보다 0.3%감소
  - 지난년도수입은 72.6%로 지난해(110%)보다 37.4% 감소
  
-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3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2.6%로 지난해(3.4%)보다 0.8% 감소하였음.

□ 결손액

(단위 : 천 원)

구 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평가액 부족	기타
합 계	3,202,819	1,697,109	39,924	256,781	590,943	613,313	4,749
지 방 세	3,041,550	1,693,430	35,229	104,793	590,559	612,913	4,626
세외수입	161,269	3,679	4,695	151,988	384	400	123

○ 2018년도 결손처분액은 32억원으로 미수납액 229억원의 14.0%를 차지하고 있음.

그 사유를 보면,

- 행방불명 1.25%(3,992만원)
- 시효소멸 8.02%(2억 5,678만원),
- 배분금액 부족 18.5%(5억 9,094만원)
- 무재산 52.9%(16억 9,711만원) 등이 결손처분 되었음.

< 결손처분액 현황 >

(단위 : 억 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결손처분액	36	48	53	40	32

-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 결손처분은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체납액에 대해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손처분의 사유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결손처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세입금 이월액(미수납액)

(단위 : 천원)

과 목	이월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계	22,908,365	2,525,199	861,255	10,107,696	2,412,561	362,635	8,520	2,014,584	11,088	3,832,786	772,040
지방세수입	20,544,046	2,299,566	855,934	8,663,144	2,366,694	362,635	8,520	1,981,386	11,088	3,832,786	162,293
취 득 세	2,882,363	765,809	53,018	912,414	284,238	23,589	0	138,657	4,943	686,309	13,387
등록면허세	123,974	4,363	5,059	69,858	4,264	249	0	14,587	0	24,713	882
지역자원시설세	1,047,546	118,056	31,919	509,758	71,645	14,593	4,815	83,152	1,631	201,638	10,339
지방교육세	6,077,410	615,309	190,063	3,010,675	195,152	19,287	1,163	950,834	1,034	1,072,068	21,824
지난년도수입	10,412,753	796,029	575,875	4,160,439	1,811,395	304,917	2,542	794,156	3,480	1,848,058	115,861
세 외 수 입	2,364,319	225,633	5,321	1,444,552	45,867	0	0	33,197	0	0	609,748
공유재산임대료	13,074	0	0	10,104	0	0	0	0	0	0	2,970
도로사용료	50,859	0	208	50,541	126	0	0	0	0	0	-16
하천사용료	16,214	0	0	15,865	0	0	0	0	0	0	349
입장료수입	6,652	0	0	0	0	0	0	0	0	0	6,652
기타사용료	67	0	0	67	0	0	0	0	0	0	0
기타수수료	1,720	0	0	148	0	0	0	0	0	0	1,571
기타이자수입	7,754	0	0	7,505	0	0	0	0	0	0	249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294,136	0	0	0	0	0	0	0	0	0	294,136
과징금	20,522	0	0	20,522	0	0	0	0	0	0	0
변상금	22,608	0	0	21,854	0	0	0	0	0	0	754
과태료	5,514	0	0	5,514	0	0	0	0	0	0	0
시도비 반환금수입	591,987	0	0	525,367	0	0	0	0	0	0	66,620
그외수입	196,280	0	0	25,437	0	0	0	4,528	0	0	166,315
지난년도수입	1,136,832	225,633	5,113	761,529	45,741	0	0	28,669	0	0	70,147

## 나. 세출결산

### □ 분야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분 야 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4,197,463	3,885,469	150,632	161,363
일반공공행정	492,746	487,220	1,452	4,074
공공질서및안전	360,758	341,781	18,583	394
교육	259,170	256,545	2,625	-
문화및관광	163,415	156,308	4,699	2,409
환경보호	202,660	201,887	607	166
사회복지	1,336,775	1,317,326	16,649	2,799
보건	70,440	70,074	49	317
농림해양수산	469,186	435,393	29,009	4,784
산업·중소기업	133,022	130,734	307	1,980
수송및교통	226,755	154,950	69,932	1,873
국토및지역개발	152,652	144,565	6,719	1,367
예비비	135,228	-	-	135,228
기타	194,658	188,686	-	5,972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이 4조 1,974억원으로  
이중 3조 8,854억원(92.6%)이 지출되고,  
1,506억원(3.6%)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613억원(3.8%)이 발생하였음.

- 지출액은 3조 8,854억원으로 전년도 3조 8,619억원보다 234억원이 증가되었음.

< 연도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61,459	206,850	134,370	133,901	150,632

- 다음연도 이월액은 1,506억원으로 전년도 1,339억원보다 167억원(12.5%)이 증가한 규모로 이월규모가 보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사업 계획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114,648	56,658	77,698	77,836	161,363

- 집행잔액은 1,613억원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도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고 매년 1천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 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당초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세출예산의 집행실적 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3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소요예산 예측의 정확성 및 사업계획의 정밀성 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당해연도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분야별 세출결산 지출액을 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927억원으로 이중 4,872억원(98.9%)이 지출되고, 14억원(0.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0억원(0.8%)이 발생하였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3,607억원으로 이중 3,417억원(94.7%)이 지출되고, 185억원(5.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원(0.1%)이 발생하였음.

-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2,591억원으로 이중 2,565억원 (99.0%)이 지출되고, 2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없음.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1,634억원으로 이중 1,563억원(95.7%)이 지출되고, 46억원(2.8%)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4억원(1.5%)이 발생하였음.

-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026억원으로 이중 2,018억 원(99.6%)이 지출되고, 6억원(0.3%)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만원(0.1%)이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조 3,367억원으로 이중 1조 3,173억원(98.5%)이 지출되고, 166억원(1.2%)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8억원(0.2%)이 발생하였음.

**-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704억원으로 이중 700억원(99.5%)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944만원, 집행잔액은 3억원(0.4%)이 발생하였음.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4,691억원으로 이중 4,353억원(92.8%)이 지출되고,  
290억원(6.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7억원(1.0%)이 발생하였음.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330억원으로 이중 1,307억원(98.3%)이 지출되고,  
3억원(0.2%)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억원(1.4%)이 발생하였음.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2,267억원으로 이중 1,549억원(68.3%)이 지출되고,  
699억원(30.8%)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원(0.8%)이 발생하였음.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1,526억원으로 이중 1,445억원(94.7%)이 지출되고,  
67억원(4.4%)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억원(0.9%)이 발생하였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이 90%이상의 집행율을 나타나고 있으나, 수송 및 교통분야(30.8%)는 평균보다 높은 이월비율로 인해 7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예산이용 : 없음

예산이체

○ 예산이체 : 총 321건에 2,387억원임.

○ 전년도 108건 61억원 대비 건수는 213건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2,326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  
권한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라 예산사용  
부서를 직제에 맞도록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전용

○ 예산전용액 : 총 30건에 15억 8,912만원임.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총 30건		1,589,122	1,589,122		
여성정책관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37,530		2018-11-19	시군 계획변경에 따른 요청으로 안심스크린을 추가 설치하고자 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530		
	201-02 공공운영비	4,500		2018-04-09	관계법령에 의한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401-01 시설비		4,500		
청년정책 담당관	201-01 사무관리비	16,264		2018-12-13	집기비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임차보다 유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6,264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0		2018-10-15	기관협의를 따라 관리비는 도에서 직접 납부하기로 하여 예산 전용을 통해 집행하고자 함
	201-02 공공운영비		7,000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04,568		2018-11-13	행안부 공문 및 시군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4,568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143,000		2018-11-13	행안부 공문 및 시군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3,000		
치수방재과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		2018-08-10	폭염예방활동 캠페인을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5,000		
총무과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4,000		2018-11-27	주요의전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201-03 행사운영비		14,000		
보건정책과	201-03 행사운영비	50,000		2018-04-23	충북을 방문하는 초청 외빈에 대한 숙박비, 식비 지원을 위해 일부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301-07 외빈초청여비		50,0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일자리 기업과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2018-03-22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을 통합 확대 운영하고자 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00		
	406-01 기타자본이전	29,874		2018-10-12	사무실 월세 임차에 따라 사무 관리비로 일부 변경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29,874		
국제통상과	201-03 행사운영비	10,000		2018-10-12	해외사절단 방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사용하고 자 함
	301-07 외빈초청여비		10,000		
문화예술 산업과	201-03 행사운영비	1,300		2018-10-22	오작교프로젝트 참여인원 확대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발생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300		
전국체전 추진단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9,000		2018-03-19	일부 시군 예산 미수립에 따라 예산전용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201-03 행사운영비		139,000		
관광항공과	201-01 사무관리비	1,512		2018-11-26	관광항공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예산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12		
	201-02 공공운영비	5,500		2018-07-03	속리산휴게소 내 관광안내도 이전 요청에 따른 공사집행 비용을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401-01 시설비		5,500		
의회사무처	201-01 사무관리비	7,000		2018-03-19	제11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해 일부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농업기술원	301-11 기타보상금	5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500		
	301-11 기타보상금	5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500		
	301-11 기타보상금	5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500		

부서명	통계목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농업기술원	301-11 기타보상금	2,4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2,400		
	301-11 기타보상금	6,05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6,050		
	301-11 기타보상금	1,05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1,050		
	301-11 기타보상금	6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600		
	301-11 기타보상금	900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900		
301-11 기타보상금	5,294		2018-04-05	실질적인 임차계약을 통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01 사무관리비		5,294			
보건환경 연구원	101-01 보수	149,280		2018-01-09	직급보조비 편성 누락으로 인해 보수의 일부분을 전용하고자 함
	204-02 직급보조비		149,280		
산림환경 연구소	201-01 사무관리비	198,000		2018-03-01	산림청 운영지침에 의거 예산과 목을 변경하고자 함
	307-05 민간위탁금		198,000		
	201-01 사무관리비	44,000		2018-03-01	산림청 운영지침에 의거 예산과 목을 변경하고자 함
	307-05 민간위탁금		44,000		
농산사업소	201-02 공공운영비	4,000		2018-11-05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이동에 따 른 파티션 설치 비용 부족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 특별회계 전용액 : 4건 6,900만원(소방특별회계)

< 연도별 예산 전용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용액 (건수)	677 (17건)	1,112 (26건)	8,221 (28건)	542 (23건)	1,589 (30건)

- 2018년도 예산전용은 30건 15억원으로 전년도 23건 5억원보다 7건 10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사전심의나 보고 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사후에 그 내용을 결산서에 명기토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임.
- 예산의 전용은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내용이나 예산집행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로서
  - 예산 전용이 의회의 승인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향후에는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중앙정부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변경내용을 분기별로 제출하는 것처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라. 계속비 집행

< 연도별 계속비 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속비	1,516	5,280	12,299	23,251	51,883

○ **2018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에 2018년 예산액 36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54억원을 합한 518억원임.

- 예산현액의 84.9%인 440억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0.5%인 5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4억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일부사업의 경우 이월액을 전액 불용처리하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계속비 사업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 2018 계속비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계		5건	36,435	15,449	51,884	44,049	5,433	2,401
1	여성정책과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	-	1,368	1,368	-	-	1,368
2	청년정책담당관	제2충북학사 건립	10,876	-	10,876	8,301	2,575	-
3	전략산업과	기능지구지원 (청주SB플라자 구축)	9,015	5,572	14,587	13,555	-	1,033
4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신축	-	850	850	96	754	-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에어로폴리스2 지구 조성사업	16,544	7,659	24,203	22,098	2,105	-

## 마. 예비비 지출

### < 연도별 예비비 예산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비비	60,620	35,061	39,528	57,709	143,828

-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38억원으로
  - 호우피해응급 복구사업 등 23건 8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 **지출액**은 80억 9,707만원(94.1%)
  - **다음년도이월액**은 4억 8,328만원
  - **집행잔액**은 2,010만원이 발생되었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제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호우피해 응급복구, 고병원성 AI차단 긴급방역비, 폭염 및 가뭄 피해 재난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 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이월 사업비 집행

(단위 : 천원)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303	150,631,622	214	111,384,790	83	33,813,505	6	5,433,327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303건 1,50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3.6%이며 지난해(245건 1,339억원) 대비 167억원(12.5%)이 증가되었음.

### < 연도별 명시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건수)	40,287 (126건)	181,234 (205건)	108,441 (144건)	102,895 (179건)	111,384 (214건)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214건, 1,113억원으로 이월예산의 73.9%를 차지함.
  - 명시이월 사업들의 이월사유가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 국비미교부, 부지 미확보(보상협의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하여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각종 행정 절차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먼저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부진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검토 의견 >

- 명시이월사업 예산현액 2,755억원 중 지출액이 1,574억원(57.1%)에 불과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214건의 명시이월 사업중 45건은 2018회계연도중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승인해 주고 있는 명시이월 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 바,
- 향후에는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확보된 예산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된 사업들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이월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첨부서류 463P)

명시이월 사업중 지출액이 “0”인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계		45건	22,391,818	1,262,755	-	21,968,318	
1	여성정책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직접)	569,000	-	-	569,000	준공시기 미도래
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운영	2,678	-	-	2,678	"
3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지원	50,000	-	-	50,000	사업미완료
4	자연재난과	영동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0,000	-	-	200,000	준공시기 미도래
5	자연재난과	황암천 황암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300,000	300,000	-	300,000	"
6	자연재난과	대전천 대전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200,000	-	-	200,000	"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7	자연재난과	소여천 소여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2,160	-	-	2,160	"
8	자연재난과	보청천 보은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5,000	-	-	5,000	"
9	자연재난과	무심천 무심지구지방하천정비사업	2,500	-	-	2,500	"
10	노인장애인과	치매전담형 시설확충사업	2,564,860	-	-	2,564,860	시군 신축부지 미확보
11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장애인회관 건립	1,000,000	-	-	1,000,000	청주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따른 지연
12	농업정책과	충북형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100,000	80,847	-	100,000	준공시기 미도래
13	농업정책과	충북형 농시마을조성 마스터플랜	150,000	-	-	150,000	용역기간 부족
14	농업정책과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300,000	-	-	300,000	
15	농업정책과	농업인기본소득제 연구용역	150,000	-	-	150,000	일정 조정
16	체육진흥과	진천선수촌 스포츠 테마타운 타당성 조사	100,000	100,000	-	100,000	준공시기 미도래
17	체육진흥과	충주시 유소년축구장 조성	1,000,000	-	-	1,00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추가배정
18	건축문화과	소규모 재생사업	50,000	-	-	50,000	국비미교부
19	도 로 과	연금-금성간 국지도건설	6,540,000	-	-	6,404,000	사전철차 이행중
20	도 로 과	연금-금성간 국지도 건설	11,500	-	-	10,000	"
21	도 로 과	대울-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5,000	-	-	5,000	준공시기 미도래
22	도 로 과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2공구)	496,400	124,988	-	496,400	"
23	도 로 과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600,000	296,520	-	600,000	"
24	도 로 과	용곡-미원2 지방도확포장공사	100,000	-	-	100,000	"
25	도 로 과	용곡-미원2 지방도확포장공사	7,000	-	-	7,000	"
26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의약 약동학분야 플랫폼 구축	20,000	18,000	-	20,000	"
27	환경정책과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150,000	-	-	150,000	"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이월사유
28	산림복지과	백두대간 종주길안내지도 제작	50,000	46,500	-	50,000	과업기간 부족
2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분원설립 추진	80,000	-	-	80,000	준공시기 미도래
30	농업기술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47,000	-	-	47,000	"
31	농업기술원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	12,000	-	-	12,000	"
32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40,910	-	-	40,910	공기부족
33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900	-	-	900	준공시기 미도래
34	도로관리사업소	2018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	3,000	-	-	3,000	"
35	도로관리사업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00	-	-	900	"
36	도로관리사업소	청남대 진입노선도로 확포장	1,000,000	-	-	1,000,000	"
37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낙성방지망 설치사업	2,989,200	-	-	2,989,200	공기부족
38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낙성방지망 설치사업	10,800	-	-	10,800	"
39	산림환경연구소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19,650	10,900	-	19,650	"
40	내수면산업연구소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물고기 체험행사	58,193	-	-	58,193	개장식 행사연기
41	내수면산업연구소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물고기 요리 경연대회	15,000	-	-	15,000	"
42	내수면산업연구소	내수면 첨단양식 생산연구시설	1,167	-	-	1,167	공기부족
43	충북경제구역청	청주에어로폴리수 3지구 조성사업	2,790,000	-	-	2,790,000	준공시기미도래
44	도 로 과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584,500	285,000	-	300,000	사전절차 이행중
45	도 로 과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12,500	-	-	11,000	"

< 연도별 사고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이월액 (건수)	18,131 (31건)	19,685 (43건)	23,550 (54건)	15,556 (57건)	33,813 (83건)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로
  -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과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등 83건 338억원(이월예산의 22.4%)으로 전년(57건 155억원)보다 26건 182억원(117%)이 증가하였음.

< 검토의견 >

- 명시이월 사유와 유사하게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준공시기 미도래,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에 비해 사고이월 금액이 급증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 집행잔액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 액	보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예비비
일반회계	161,362,843	7,502,294	1,166	15,719,714	792,707	2,119,376	135,227,587

< 연도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집행잔액	114,648	56,658	77,698	77,836	161,363

- 집행잔액은 1,6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이며, 전년도 778억원 보다 814억원(107.3%)이 증가되었음.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원 인	2018년	2017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원(4.6%)	72억원(9.2%)
예산집행잔액	157억원(9.7%)	152억원(19.6%)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0.4%)	10억원(1.3%)
예비비	1,352억원(83.8%)	543억원(69.8%)
보조금 반납금	21억원(1.3%)	11억원(1.4%)

< 검토의견 >

-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1,613억원으로 불용율은 3.8%임.
- 또한, 전체 집행잔액 1,613억원에 대한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원(4.6%), 예산집행잔액 157억원(9.7%)을 차지하고 있음.
-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정시 예산삭감이 안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 않는 불성실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사업추진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리추경시 삭감하면 다음연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삭감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의 삭감을 적극 유도하고, 전 부서 공통 편성목의 집행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서간 조정하는 등 편성예산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각 사업부서에서는 무리한 예산확보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 사업계획 등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수립되었는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재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 대하여도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전액 불용 처리된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등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58건)에 대하여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 불용률 50%이상인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58건	149,124,790	4,413,085	144,711,404	97%
1	공보관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43,050	10,817	32,233	75%
2	여성정책관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	1,368,244	0	1,368,244	100%
3	정책기획관	도정 주요시책업무 추진	100,000	0	100,000	100%
4	정책기획관	의원 상해 등 보상	22,000	0	22,000	100%
5	예산담당관	예산성과금운영	20,000	6,400	13,600	68%
6	예산담당관	예비비 운영	38,105,005	0	38,105,005	100%
7	예산담당관	예비비 운영	97,122,582	0	97,122,582	100%
8	예산담당관	기본경비	47,250	18,141	29,109	62%
9	청년정책담당관	기본경비	32,130	11,143	20,987	65%
10	법무혁신담당관	제안제도 활성화	15,600	3,310	12,290	79%
11	법무혁신담당관	제안제도 활성화	14,800	3,660	11,140	75%
12	법무혁신담당관	기본경비	28,350	12,969	15,381	54%
13	자연재난과	학산천 원당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7,968	0	97,968	100%
14	자연재난과	용두천 오창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90,453	0	90,453	100%
15	총무과	체육대회 참가 지원	38,000	12,985	25,015	66%
16	총무과	인사고료자 지원	276,000	115,215	160,785	58%
17	총무과	대체인력(행정도우미) 운영	47,189	7,442	39,747	84%
18	민간협력공동체과	보전지출	354,786	27,075	327,711	92%
19	회계과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00,000	0	200,000	100%
20	회계과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518,000	44,805	473,194	91%
21	복지정책과	보전지출	414,130	198,629	215,501	52%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2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비 지원	50,000	0	50,000	100%
23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심사수당	21,525	7,295	14,230	66%
24	노인장애인과	보전지출	115,223	4,531	110,692	96%
25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0,000	14,276	25,724	64%
26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15,000	4,510	10,490	70%
27	보건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0,000	23,989	26,011	52%
28	전략산업과	기능지구 지원(청주SB플라자구축)	24,200	4,510	19,690	81%
29	전략산업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기획	213,520	106,796	106,724	50%
30	전략산업과	기전융합형 소재·부품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120,000	57,317	62,683	52%
31	국제통상과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40,800	14,485	26,315	64%
32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21,600	10,800	10,800	50%
33	농업정책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8,400	1,089	17,311	94%
34	농업정책과	경관보전직접직불제	15,072	2,268	12,804	85%
35	유기농산과	쌀 생산조정제 사업	6,792,450	3,410,852	3,381,598	50%
36	유기농산과	농업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도)	20,000	8,176	11,824	59%
37	유기농산과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29,700	1,870	27,830	94%
38	생활다축전추진단	전국소년체전 준비운영	183,900	50,650	133,250	72%
39	관광항공과	단양군 지질예술공원 조성	600,000	0	600,000	100%
40	관광항공과	신규 노선 개설 추진	200,000	51,000	149,000	75%
41	도로과	문의-대전국지도건설	88,612	140	88,472	100%
42	혁신도시발전 추진단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00,000	10,333	389,667	97%
43	바이오정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원형지 매입개발	12,000	0	12,000	100%
44	환경정책과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	22,000	8,680	13,320	61%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45	의회사무처	의정활동업무추진	51,000	17,687	33,313	65%
46	의회사무처	입법활동지원	14,250	1,550	12,700	89%
47	자치연수원	도민 글로벌 연수 과정	22,162	8,737	13,425	61%
48	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개발	23,800	7,729	16,071	68%
49	<b>도로관리사업소</b>	<b>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b>	<b>18,846</b>	<b>70</b>	<b>18,776</b>	<b>100%</b>
50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지방도관리 및 재료구입	26,384	3,253	23,131	88%
51	산림환경연구소	도유림 관리 운영	19,900	8,799	11,101	56%
52	농산사업소	원종시설관리	15,986	5,854	10,132	63%
53	내수면산업연구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49,954	13,892	36,062	72%
54	내수면산업연구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	119,569	50,712	68,857	58%
55	내수면산업연구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업체 관리	30,800	4,990	25,810	84%
56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본경비	22,600	3,114	19,486	86%
57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주에어로폴리스1지구 조성사업	620,000	4,499	615,501	99%
58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활동지원	40,000	16,041	23,959	60%

### < 검토 의견 >

- 201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요청(충청북도 회계과 1. 18)에서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기준을 1건당 예산금액이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등자본 이전은 3억원이상, 기타 사업비는 1억원이상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 결산 심사는 사업규모를 떠나 2018년 회계연도에 사업이 충실히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이므로 전액미집행 및 불용율 50%이상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자료를 작성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노인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설치 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년동안 전액 불용처리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소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 2019년도 예산액 5,000만원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전년도 예산액 전액이 이월된 여성정책관의 스마트 미래여성플라자 건립사업(13억원)의 전액 불용처리와 회계과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7억원) 예산의 불용율이 94%에 달하는 등, 예산 불용율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사업종료 시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할 수 없어, 다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이월결정시 향후 집행잔액이나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아. 채무부담 행위 : 없음

### 3. 특별회계 결산

####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525,238	527,227	468,434	58,793
기 타 특 별 회 계	525,238	527,227	468,434	58,793
소 방 특 별 회 계	192,020	191,978	178,178	13,800
의 료 급 여 기 금	233,321	233,339	233,265	74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4,592	14,504	13,020	1,484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9,147	41,384	11,752	29,632
광 역 교 통 시 설	13,550	13,393	2,194	11,199
충 청 북 도 균 형 발 전	32,608	32,629	30,025	2,604

- 소방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920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91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 세출결산액은 1,78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8%
  - 결산상잉여금은 13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 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33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2,3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0%
  - 세출결산액은 2,33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
  - 결산상잉여금은 7,41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3%임.
- 농어촌개발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5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45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4%
  - 세출결산액은 130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2%
  - 결산상잉여금은 14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임.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91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41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7%
  - 세출결산액은 117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0.0%
  - 결산상잉여금은 2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7%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5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8%
  - 세출결산액은 2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2%
  - 결산상잉여금은 11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6%임.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26억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3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
  - 세출결산액은 300억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1%
  - 결산상잉여금은 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임.

## 나.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25,238	532,237	527,227	5,009
기 타 특 별 회 계	525,238	532,237	527,227	5,009
소 방 특 별 회 계	192,020	192,104	191,978	126
의 료 급 여 기 금	233,321	233,339	233,339	-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4,592	14,505	14,505	-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9,147	41,383	41,383	-
광 역 교 통 시 설	13,550	18,276	13,393	4,883
충 청 북 도 균 형 발 전	32,608	32,629	32,629	-

-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를 보면  
소방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252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22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27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  
예산현액대비 100.4%의 수납율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 49억원이 이월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추진  
하여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25,238	468,434	22,987	33,817
기 타 특 별 회 계	525,238	468,434	22,987	33,817
소 방 특 별 회 계	192,020	178,178	11,987	1,854
의 료 급 여 기 금	233,321	233,265	-	56
농 어 촌 개 발 기 금	14,592	13,020	-	1,572
학 교 용 지 부 담 금	39,147	11,752	11,000	16,394
광 역 교 통 시 설	13,550	2,194	-	11,357
충 청 북 도 균 형 발 전	32,608	30,025	-	2,584

- 2018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소방특별회개 등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52억원으로
  - 지출액은 4,684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9.2%이며
  - 집행잔액은 **338억원**으로 예산현액의 6.4%임.

○ 회계별 지출액 및 집행잔액(예산현액대비)은

– 소방특별회계

- 지출액은 1,781억 7,840만원(92.8%)
- 집행잔액은 18억 5,467만원(0.9%)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2,332억 6,469만원(100%),
- 집행잔액은 5,589만원(0.1%)

–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30억 1,981만원(89.2%),
- 집행잔액은 15억 7,174만원(10.8%)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 지출액은 117억 5,242만원(30.0%),
- 집행잔액은 163억 9,446만 원(41.9%)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 지출액은 21억 9,364만원(16.2%),
- 집행잔액은 113억 5,684만원(83.8%)

– 충청북도균형발전 특별회계

- 지출액은 300억 2,471만원(92.1%),
- 집행잔액은 25억 8,374만원(7.9%)

< 과다 발생 집행잔액 내역 >

특별회계명	집행잔액(억원)	예산현액 대비
계	338	
○ 학교용지부담금	164	41.9%
○ 광역교통특별회계	114	83.8%
○ 농어촌개발기금	16	10.8%
○ 균형발전특별회계	26	7.9%
○ 소방특별회계	18	0.9%

-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 운용을 위해 수입·지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회계로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나 일반회계 집행을 95%에 비해 매우 낮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큰 규모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자금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이월률이나 불용률이 과다한 특별회계의 경우 그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책 등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II. 기금결산

### 가. 기금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806,869	199,940	222,994	783,815
양성평등기금	6,713	42	55	6,700
통합관리기금	4,466	1,091	523	5,03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6	312	-	2,418
자활기금	2,196	112	113	2,195
사회복지기금	28,980	231	224	28,987
식품진흥기금	12,453	609	625	12,419
투자진흥기금	2,772	5,413	-	8,186
중소기업육성기금	37,690	38,091	41,733	34,048
체육진흥기금	2,669	18	-	2,687
재난관리기금	32,429	11,166	7,648	35,947
환경보전기금	32,213	4,468	1,848	34,833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331	102	89	6,344
청소년육성기금	1,480	11	13	1,478
지역개발기금	634,388	138,274	170,123	602,539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필요에 따라 공공목적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현재 총 14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은 특정한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 충청북도의 기금은

- 2018회계연도에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17년도말 8,068억원에서 2018회계연도 중 1,999억원을 조성하고, 2,229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7,838억원임.
- 기금의 설립 목적과 운용기준에 부합하여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금별로 보면

-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67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246만원을 조성하고 5,5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7억원임.
-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4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원을 조성하고 5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0억원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2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억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2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을 조성하고 1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1억원임.
-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8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을 조성하고 2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9억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2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원을 조성하고 6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4억원임.

- **투자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7억원에서 당해연도에 54억원을 조성하고 미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1억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7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80억원을 조성하고 417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0억원임.
-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말 2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777만원을 조성하고 미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억 8,635만원임.
-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32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11억원을 조성하고 76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9억원임.
- **환경보전기금**은 전년도말 32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4억원을 조성하고 18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8억원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말 6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원을 조성하고 8,85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원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전년도말 14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133만원을 조성하고 1,25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원임.
- **지역개발기금**은 전년도말 6,34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382억원을 조성하고 1,701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025억원임.

## 나. 기금운용 명세

### < 수 입 >

(단위 : 백만원)

구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 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30	603,809	12,084		82,945	76,868	88,484	312,477	2,908	18,010	10,032
양성평 등기		154						112		41	1
통합관 리금		29,060					22,333	2,727	2,908	1,091	
남북교 류기		1,547	300				1,200	34		12	
자활기 금		632				90		520		21	1
사회복 지기		18,527					2,638	15,658		230	
식품진 흥기		2,044				299		1,435		74	236
투자진 흥기		8,186						2,773		29	5,384
중소기 육성기		75,781	1,000			36,575		37,690		516	
체육진 흥기		25						7		18	
재난관 리금		34,244	10,784				4,676	18,403		212	170
환경보 전기	30	10,550						6,083		233	4,234
농촌전 문인 력육 성기		6,433						6,331		95	7
청소년 육성 기		21						10		11	
지역개 발기		416,604			82,945	39,904	57,637	220,693		15,425	

< 지 출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					출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 고 등)
	계	비용자성 사 업 비	용자성 사 업 비	인 력 운 영 비	기 본 경 비	예 치 금	예 탁 금	차 입 금 상 환	예 수 금 상 환	기 타 지 출	
계	603,839	11,517	70,833			294,423	77,908	140,121	9,037		
양성평 등 기 금	154	55				99					
통합관 리 기 금	29,060					2,023	18,000		9,037		
남북교 류 협 력 기 금	1,547					1,547					
자 활 기 금	632	113				519					
사 회 복 지 기 금	18,527	225				18,302					
식 품 진 흥 기 금	2,044	525	100			1,219	200				
투 자 진 흥 기 금	8,186					8,186					
중 소 기 업 성 기 금	75,781	1,000	40,733			34,048					
체 육 진 흥 기 금	25					5	20				
재 난 관 리 기 금	34,244	7,648				26,596					
환 경 보 전 기 금	10,581	1,848				6,044	2,688				
농 촌 전 문 인 력 육 성 기 금	6,433	89				6,344					
청 소 년 육 성 기 금	21	13				9					
지 역 개 발 기 금	416,604	2	30,000			189,481	57,000	140,121			

○ 기금운용 내역을 보면

- 수입에서 총수입액은 6,038억원으로

· 전입금	120억원(2.0%)
· 차입금	829억원(13.7%)
· 용자회수금	768억원(12.7%)
· 예탁금원금회수	884억원(14.7%)
· 예치금회수	3,124억원(51.8%)
· 예수금	29억원(0.5%)
· 이자수입	180억원(3.0%)
· 기타(과징금, 과태료 등)	100억원(1.7%)임.

- 지출에서 총지출액은 6038억원으로

· 비용자성사업비	115억원(1.9%)
· 용자성사업비	708억원(11.7%)
· 예치금	2,944억원(48.8%)
· 예탁금	779억원(12.9%)
· 차입금 원리금상환	1,401억원(23.2%)
· 예수금 원리금상환	90억원(1.5%)임.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4개 기금 중 환경보전기금 등 5개 기금이 예탁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	180억원	- 식품진흥기금	2억원
- 체육진흥기금	0.2억원	- 환경보전기금	27억원
- 지역개발기금	570억원 등		779억원이 예탁되었음.

## < 검토의견 >

-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한부모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 2018연도에는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5,406만원을 조성한 후, 여성발전 공모사업으로 14개 단체, 5,500만원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음
  - 전년도말 조성액 45억원에서 2018회계연도말에는 50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탁금 이자수입 등에 원인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현재 적립액은 24억원 규모임. 현재 대북제재 아래 추진 가능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교류, 인도적 지원 사업과 대북제재 완화 시 충북만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자활기금은 자활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사업장 임대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제공으로 자활·자립 조기 성공지원, 자활사업 참여자의 공동체 의식 형성 및 근로의식을 고취하여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세자금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으로 연간 적정예산 편성 및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의 지속 발굴이 필요함.

- 사회복지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재해구호기금과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인 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해 1989년부터 조성된 기금인 바, 그동안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지원, 향토음식관련 사업비 지원 등을 펼치고 있으나, 더욱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유치가 불리한 남·북부지역(6개군)의 전략적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81억원을 적립하여 운용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도 사용액은 417억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40억원으로 나타남.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혜택을 받는 관내기업에 대하여 청년실업률 제고 및 고용 확대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체육진흥기금은 일정기간 지출 없이 100억원 적립을 목표로 순세계 잉여금의 3% 범위내에서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고 예치금회수 727만원과 이자수입 1,777만원에 불과하여 기금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재해의 예방, 응급조치 및 복구사업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2018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7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2억원을 등을 조성하였고,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76억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359억원을 조성하였음.
  - 앞으로 대형 재난·재해 등의 증가로 재난관리 기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법에서 정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적립금이 최대한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그동안 미 적립한 금액에 대한 적립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환경보전기금은 2007년도부터 운용하여 연도말 현재 348억원을 적립하여 200억원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향후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연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18년도말 현재 63억원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100억원의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세입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향후 살기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일반회계를 통한 예산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육성기금은 불우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생활정착 지원을 위해 조성하였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장학금 지급)실적(2016년 21명 1,050만원, 2017년 22명, 1,100만원, 2018년 25명 1,250만원 )이 저조한 바, 기금 추가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기금법 제2조에 의거 2017. 1. 1.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되었음.
  - 주요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하여 2018연도말 조성액은 6,025억원의 규모로 지역개발채권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이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자되는 바, '18년 6건 870억원, '19년 3건 390억원으로 용자신청이 저조하여 적극적인 기금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Ⅲ. 채권·채무 결산

#### 1. 채권현재액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
합 계	695,215,386	571,962,607	985,667,492	281,510,501
일 반 회 계	37,757,989	10,260,815	9,310,861	38,707,943
특 별 회 계	39,476,017	28,050,171	28,936,150	38,590,038
소 방 특 별 회 계	1,136	5,038	710	5,464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39,474,881	28,045,133	28,935,440	38,584,574
기 금	617,981,380	533,651,621	947,420,481	204,212,520

- **201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815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6,952억원 보다 4,137억원(△59.5%)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전년도 377억원보다 9억원(2.5%)이 증가된 387억원임.
  - **특별회계**는 전년도 394억원보다 8억원(△2.2%)이 감소된 385억원으로,
  - **기금**은 전년도보다 4,137억원(△67%)이 감소되었음.

## 2. 채무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지난해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684,395,659	82,944,840	125,039,680	642,300,819
기 금	684,395,659	82,944,840	125,039,680	642,300,819
지역개발기금	684,395,659	82,944,840	125,039,680	642,300,819

○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현재액 6,843억원에서 당해연도에 829억원을 발행하고, 1,250억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423억원으로 420억원(△6.2%)이 감소됨.

- 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무는 모두 소멸되어 부채가 없으며, 이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지방채상환에 따른 것이며, 기금(지역개발채권)만 당해연도말 6,423억원임.

## IV. 재산·물품 결산

### 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8,123,072,396	6,100,113,104	5,686,760,462	8,536,425,038
행정 재산	7,979,027,943	6,074,698,227	5,671,095,124	8,382,631,046
- 공용재산	6,764,981,096	34,575,084	5,669,975,880	1,129,580,299
- 공공용재산	1,081,081,623	6,040,123,143	894,244	7,122,310,523
- 기업용재산	130,400,900	-	225,000	130,175,900
- 보존용재산	564,324	-	-	564,324
일반 재산	144,044,453	25,414,877	15,665,338	153,793,992

- 201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5,364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조 1,230억원보다 4,133억원(5.1%)이 증가된 것으로
  - 이는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행정재산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7조 9,790억원보다 4,036억원(5.1%)이 증가된 8조 3,826억원이며,
  - 일반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1,440억원보다 97억원(6.8%)이 증가된 1,537억원임.

## 2. 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8,123,072,396	6,100,113,104	5,686,760,462	8,536,425,039
토 지	1,231,738,380	72,545,910	18,173,501	1,286,110,789
건 물	418,280,377	33,836,059	688,550	451,427,886
입목축	7,034,766	-	-	7,034,766
공작물	6,314,653,104	5,991,941,493	5,667,171,897	6,639,422,700
기계기구	1,013,816	392	392	1,013,816
선 박	2,476,238	119,250	-	2,595,488
항공기	6,883,800	-	-	6,883,800
무체재산	2,950,593	-	-	2,950,593
유가증권	133,400,900	1,000,000	225,000	135,175,900
용익물권	3,640,422	670,000	501,122	3,809,300

○ **2018도 재산 순 증감액**은 전년도말 현재액(8조 1,230억원)대비 4,133억원 (5.1%)이 증가됨.

- 토 지            543억 7,241만원 (전년도 대비 4.4%)

- 건 물            331억 4,751만원 (        "        7.9%) 등으로 나타남.

○ 일정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의 경우 기준가격을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취득 또는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증가 및 부지매입,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의 증가로 판단됨.

### 3.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천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	당해연도 증감실적						당 해 연도말 보유
		취 득			처 분			
		소계	구매	관리전환	소계	양여	기타	
수량	3,636	385	384	1	419	343	76	3,602
금액	64,834,355	14,827,221	14,809,014	18,207	2,269,311	1,491,456	804,333	77,392,265

○ 2018년도말 물품수량 및 현재액은

3,602개 773억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4개 감소, 125억원(19.47%)이 증가하였음.

○ 증감현황을 보면

- 증가부분은 구매 384개 148억원, 관리전환 1개 1,821만원으로 385개 148억원이 증가하였고,
- 감소부분은 양여 343개 14억원, 기타 76개 8억원 등 419개 22억원이 감소하였음.

#### < 검토의견 >

- 2018회계연도에 385개 148억원의 물품을 취득하고, 419개 23억원의 물품을 처분하여, 실제로는 현재액 125억원이 증가되었음.(물품 34개 감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요 물품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정해야 할 것이나 실제 물품 보유현황을 보면, 정수가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한 현실성 있는 물품 정수 책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물품 증감 현황

품 명	단 위	전연도말 현 재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양여	기타	소계	
		3,636	384	1	385	7	343	69	419	3,602
미니버스	대	62	23	0	23	3	0	0	3	82
버스	대	15	2	0	2	1	0	0	1	16
일반승용차	대	74	4	0	4	0	1	0	1	77
미니밴또는밴	대	2	0	0	0	0	0	0	0	2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대	59	5	0	5	0	0	0	0	64
덤프트럭	대	9	1	0	1	0	0	1	1	9
화물트럭	대	80	7	1	8	0	0	1	1	87
구급차	대	119	19	0	19	0	0	0	0	138
소방펌프차	대	62	18	0	18	0	0	0	0	80
소방물탱크차	대	17	1	0	1	0	0	0	0	18
소방화학차	대	6	0	0	0	0	0	0	0	6
소방사다리차	대	12	6	0	6	0	0	0	0	18
구조공작차	대	4	5	0	5	0	0	0	0	9
조연차	대	7	0	0	0	0	0	0	0	7
화재조사차	대	1	0	0	0	0	0	0	0	1
지휘차	대	2	2	0	2	0	0	0	0	4
도로보수차	대	2	0	0	0	0	0	0	0	2
노면청소차	대	4	0	0	0	0	0	0	0	4
분무기탑재차	대	8	0	0	0	0	0	0	0	8
견인트럭	대	1	0	0	0	0	0	0	0	1
탱크트럭	대	4	0	0	0	0	0	0	0	4
전기자동차	대	4	1	0	1	0	0	0	0	5
무정전전원장치	대	192	7	0	7	0	9	3	12	187
냉방기	대	328	10	0	10	0	15	9	24	314
항온항습기	대	87	5	0	5	0	26	3	29	63
냉난방기	대	692	57	0	57	1	41	3	45	704

품 명	단위	전연도말 현 재	당해연도 물품 증감현황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양여	기타	소계	
실험용세척기	대	21	0	0	0	0	1	0	1	20
미량원심분리기	대	47	3	0	3	0	15	4	19	31
건조캐비닛또는오븐	대	71	0	0	0	0	8	0	8	63
실체현미경	대	77	2	0	2	0	14	3	17	62
전자현미경	대	4	0	0	0	0	2	0	2	2
신호발생기	대	22	0	0	0	0	22	0	22	0
분광광도계	대	37	3	0	3	0	9	0	9	3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대	37	2	0	2	0	8	0	8	3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대	37	3	0	3	0	5	1	6	34
고압증기멸균기 또는소독기	대	62	3	0	3	1	2	3	6	59
노트북컴퓨터	대	426	44	0	44	0	39	2	41	429
구내교환장비	대	33	1	0	1	0	00	0	0	34
복사기	대	307	29	0	29	0	27	24	51	285
다기능복사기	대	143	4	0	4	0	22	11	33	114
비디오프로젝터	대	185	33	0	33	0	57	1	58	160
구내방송장치	대	34	0	0	0	0	0	0	0	34
비디오편집기	대	6	0	0	0	0	0	0	0	6
영상정보 디스플레이장치	대	34	1	0	1	0	0	0	0	35
디지털캠코더 또는비디오카메라	대	192	80	0	80	0	19	0	19	253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8	3	0	3	0	1	0	1	10



## V. 결산검사 결과 요약

-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대표위원 이의영외 8명)은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2018. 4. 5 - 4. 16)하여 총 12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음

### < 결산검사 지적사항 목록 >

연번	소관부서	주요내용
1	소방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 예산 집행방법 개선 및 변경계약 부적정
2	청남대 (예산담당관)	청남대(영춘제 등) 축제예산 미흡 현실화 강구
3	예산담당관 (전부서)	보조금 반납금 및 세출이월예산 최소화 방안 강구
4	전략산업과	장기투자증권 평가의 적정성
5	회계과 (전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산정의 적정성
6	예산담당관 (전부서)	성과지표, 목표설정 및 운영방법 개선
7	예산담당관	재무제표 결산서 - 채권·채무관리보고서 작성 철저
8	회계과	고문회계사 및 세무사의 상시자문 활용
9	세정담당관	지방세입 과오납 환급금 발생 최소화 운영
10	회계과 (전부서)	1인 수의계약 집행 개선 권고
11	회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절차 개선
12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 신규임용자 개인안전장비 구입방법 개선

## VI. 주요 재정사항 요약

### ○ 요약 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7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912,949	9.30%	816,347	8.41%
투자자산	355,781	3.62%	357,137	3.68%
일반유형자산	746,923	7.61%	715,501	7.37%
주민편의시설	408,326	4.16%	385,918	3.97%
사회기반시설	7,384,490	75.23%	7,426,347	76.49%
기타비유동자산	7,794	0.08%	8,052	0.08%
<b>자 산 총 계</b>	<b>9,813,263</b>	<b>100%</b>	<b>9,709,302</b>	<b>100%</b>
유동부채	242,715	29.34%	248,104	27.95%
장기차입부채	505,839	61.14%	557,647	62.82%
기타비유동부채	78,782	9.52%	81,921	9.23%
<b>부 채 총 계</b>	<b>827,336</b>	<b>100%</b>	<b>887,672</b>	<b>100%</b>
고정순자산	8,500,396	94.57%	8,486,284	96.20%
특정순자산	316,726	3.52%	295,063	3.34%
일반순자산	171,805	1.91%	40,284	0.46%
<b>순 자 산 총 계</b>	<b>8,988,927</b>	<b>100%</b>	<b>8,821,630</b>	<b>100%</b>
<b>부채 및 순자산총계</b>	<b>9,816,263</b>		<b>9,709,302</b>	

### ○ 충청북도의 지방공사·공단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총자산*	10,288,763	9,816,263	472,500
총부채	1,030,139	827,336	202,803

※ 총자산 10,288,763백만원은 지방공사공단 출자금 130,176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공사·공단 출자금을 차감할 경우 총자산은 10,158,587백만원임

○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

분야	지표명	산식	2018	2017
재정 상태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총자산 × 100	8.43%	9.14%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83.13%	82.50%
	③ 유형고정자산 대비 부채비율	부채 / 유형고정자산 × 100 ※ 부채 :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 유형고정자산 : 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8.77%	9.45%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25.48%	34.31%
	⑤ 현금창출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100 ※ 현금창출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 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확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0.19%	89.66%
	⑥ 재정자금 대비 차입부채 비율	차입부채 / 재정자금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장·단기 금융상품	92.72%	105.26%
	⑦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 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26.59%	30.39%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14.65%	15.21%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34.88%	37.75%
재정 운영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세출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100	92.19%	94.27%
	② 경상수익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60.60%	60.98%
	③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1.34%	1.35%
	④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92.17%	85.65%
	⑤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46.31%	43.47%
	⑥ 경상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경상자체조달수익 / 경상수익 × 100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	61.52%	63.11%
	⑦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2.41%	2.51%
	⑧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12.69%	11.01%
	⑨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30.40%	28.02%
	⑩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5.89%	4.93%
회계 책임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총자산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6,138,034	6,089,505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총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517,327	556,732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실질부채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453,827	556,732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569,325	2,524,788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770,078	728,352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지방세수익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710,224	670,967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372,152	2,388,715
	⑧ 주민 1인당 민간등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 인구수(회계연도말 인구수)	212,180	218,104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총수익 / 공무원( 현원=(기초+기말)/2 )	1,193,608,878	1,199,524,050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총비용 / 공무원( 현원=(기초+기말)/2 )	1,102,009,697	1,134,875,742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총급여 / 공무원( 현원=(기초+기말)/2 )	70,447,796	68,028,827

## VII.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별	지출 결정일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계	23건		8,600,446	8,097,066	483,276	20,104	
1	민간협력 공동체과	2018-01-17	28,090	27,526		564	지역공동체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18.1.1.조직개편)
2	동물방역과	2018-01-17	19,200	19,200			동물방역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3	동물방역과	2018-01-19	409,500	409,500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4	동물위생 시험소	2018-01-19	76,500	76,500			고병원성 AI 차단방역(검사재료구입)
5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2018-01-19	14,000	13,969		31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차량소독 시설 설치
6	사회재난과	2018-02-12	596,608	596,608			제천복합건물 화재 피해복구비
7	일자리정책과	2018-02-20	80,000	60,541		19,459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참가
8	도로과	2018-03-15	60,000	60,000			칠금-가금 국지도 건설 토지수용 공탁비
9	회계과	2018-04-10	111,018	111,018			산단개발지원과 등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18.4.5.조직개편)
10	회계과	2018-04-10	18,730	18,730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사무실 조성 ('18.4.5.조직개편)
11	유기농산과	2018-06-08	14,490	14,490			한파피해(1~2월)재난지원금 도부담분
12	축수산과	2018-07-31	100,000	100,000			폭염대비 가축피해 예방 대책 추진
13	유기농산과	2018-08-01	1,000,000	1,000,000			폭염에 따른 농작물 가뭄 대책비
14	농업기술원	2018-08-03	520,000	520,000			과수화상병 집중관리대책 지원
15	유기농산과	2018-09-03	1,049,700	1,049,700			4월 이상 저온피해 농작물 재난지원금
16	자연재난과	2018-10-04	114,875	114,875			호우재해 복구비(8.26~9.1)
17	자연재난과	2018-10-04	2,375,915	2,375,915			호우재해 복구비(8.26~9.1, 9.3~9.4)
18	도로관리 사업소	2018-10-04	480,348		480,348		8.26~9.1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시설비)
19	도로관리 사업소	2018-10-04	3,480	552	2,928		8.26~9.1 호우피해 수해복구비(시설부대비)
20	산림녹지과	2018-10-15	27,195	27,195			4월 이상저온에 따른 임산물피해 재난지원금
21	유기농산과	2018-10-24	1,381,471	1,381,471			7~8월 폭염, 가뭄 피해 재난지원금
22	에너지과	2018-11-09	31,974	31,925		49	에너지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 ('18.10.1.조직개편)
23	산림녹지과	2018-11-29	87,352	87,352			7-8월 폭염, 가뭄 임산물 피해 재난지원금

○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38억 2,803만원**

- 호우피해로 인한 응급복구사업 등 23건, 86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예비비의 지출제한은 그 성격이나 제도설치의 취지라는 측면에서는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예비비에 대한 지출한계를 명시하고 있음**

- 호우피해복구비, 구제역 긴급방역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비용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VIII. 성과보고서

### < 성과예산 달성현황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달성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개수	지표수			
28	139	321	36	258	27
			11.2%	80.4%	8.4%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운용)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 제4항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충청북도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 2018년 정책사업 목표수는 139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 지표수는 321개 사업으로 개별지표에 따른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36건으로 전체사업의 11.2%이며, 달성은 258건으로 80.4%, 미달성은 27건으로 전체의 8.4%에 해당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27개 지표는 성과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미달성 지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IX. 성인지 결산

### <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88	104,921	101,317	96.57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소계	10	7,053	7,047	99.92 %
	일반회계	9	6,992	6,992	100.00 %
	기타특별회계	-	-	-	0.00 %
	기금	1	61	55	90.76 %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소계	47	38,861	35,694	91.85 %
	일반회계	45	37,376	34,523	92.37 %
	기타특별회계	2	1,485	1,171	78.83 %
	기금	-	-	-	0 %
자치단체특화 사업	소계	31	59,007	58,576	99.27 %
	일반회계	28	58,070	57,738	99.43 %
	기타특별회계	1	822	723	88.00 %
	기금	2	115	115	100.00%

- 성인지예산은 총 88개 사업에 1,04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1,013억원이 지출되어 96.5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0개 사업에 70억원(99.9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7개 사업에 356억원(91.85%), 자치단체특화사업 31개 사업에 585억원(99.27%)백만원을 집행, 대체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임.
- 성인지 결산결과 양성평등정책추진 등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남.